

KERI Brief

한국의 복지지출과 재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glcho@keri.org)

현 정부에서도 178조 원이 요구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재원조달방법으로 '서민감세-부자증세'를 표명하면서 '복지는 공짜, 세부담은 부자들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복지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조세정책은 비정상적으로 흐르기 쉽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성이 높다.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영미형 복지 지출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을, 203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60년에 북유럽형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현재 18.5%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어 우리경제가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 조세부담률을 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의 전철을 밟는다고 가정하면 세입확

대보다는 세출증대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조달해야 한다. 다음은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자비율을 확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텍스갭 축소를 통해 조세포착률을 확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축소신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와 연계되어 있어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세입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조세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와 달리 저축에 비과세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왜곡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도가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은 좁은 세원 때문인 만큼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세원확대에 역점을 뒤탈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1. 서론

▣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필요재원에 대한 정확한 장기전망과 자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될 때 복지재정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조세제도의 정상화도 도모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향후 5년간 178조 원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마치 현 정부 이후에는 추가재원 없이도 도입된 복지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오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복지수혜대상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정부 이후 5년마다 들어가는 재원은 178조 원을 크게 상회할 전망

○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 발생하는 장기적인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 근본적인 자원조달 계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이 인기 영합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짐

- '서민감세-부자증세'와 같은 구호로 '복지는 공짜, 세 부담은 부자의 몫'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다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제약 없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구조는 글로벌 추세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복지확대 요구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우리가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 국민부담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부담-복지수준'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합의를 이끌어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

▣ 조세정치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든 때 실현 가능하며, 세제의 정상화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세제를 운영할 때 가능함

○ 세금은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 명목 최고세율을 높이려는 정치적 논리가 팽배해지고 궁극적으로 서민의 부담

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부자증세 논리에 치우쳐 세계적 추세와 달리 최고세율을 인상할 때 자본과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불가피해지고 세입기반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수입은 기대보다 적게 걷히고 복지지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복지재정의 규모와 자원조달 방법과 우선순위를 고찰하는데 있음

○ 본 연구는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그리고 복지재정의 장기 목표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 우리나라 복지재정은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자원조달에 앞서 예상되는 복지재정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함

○ 본 연구는 큰 틀에서 재정지출 축소와 세 부담 확대 중 어디에 중점을 뒴아하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세부 자원조달 방안의 장단점과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음

- 자원조달 수단은 다양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 형평성, 수용성 측면에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옴¹⁾

1) 최광(2013)은 자원조달 방안을 크게 국공채 발행,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축소, 일반조세 확대, 공공자산 매각, 사회보장 기금 및 부담금 인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II. 복지재정의 장기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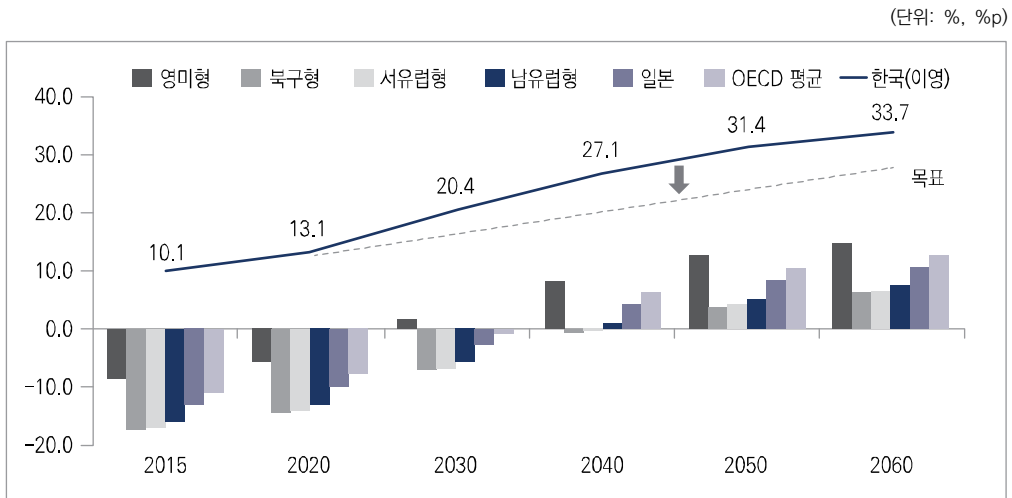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현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향후 빠르게 증가하여 2040년이 되면 선진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 가장 최근의 복지제도를 반영하여 복지재정을 추정한 이영(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2020년에 13.1%, 2030년에 20.4%, 2050년에 30%를 넘어 2060년에 33.7%에 달할 전망이다²⁾
- <그림 1>의 막대그래프에서 보듯이, 2020년 후반부터 선진국을 추월하기 시작하여 2040년 이후에는 모든 선진국의 지출수준보다 높을 전망이다
 - 선진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90년 이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우리의 복지지출은 2020년 후반에 영미형 국가를 추월하고, 2030년대 초반에 OECD 평균을 추월하고, 2030년 중반에는 일본의 지출수준을 초과할 전망이다³⁾
- 2041년부터는 모든 유형의 복지지출 수준을 넘어 서고, 2060년에는 북유럽 유형의 지출수준보다 6.2%p 높은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다

- 2) 이영(2014)는 34개 OECD 국가들에 대한 1980~2011년 사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지출을 추정하고 있는데, 복지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고령화, 경제성장, 인구증가를 고려하고 있음. 이영(2014)의 전망결과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성향의 60%만 달성한다는 가정 하에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음. 사회보장위원회(2014)는 현재의 복지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인구변화만을 고려하여 복지지출 비중을 전망하고 있는데, 2060년의 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29%로 전망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2012)는 의무지출 비중을 2060년에 22.4%로 추정하고 있음
- 3) GDP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2015년 현재 영미형 18.9%, 북유럽형 27.5%, 서유럽형 27.2%, 남유럽형 26.2%, 일본 23.1%이고 OECD 평균은 21%에 달함. 남유럽형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미형, 북유럽형, 서유럽형 복지국가의 사회지출 비중은 1990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1> 한국의 사회지출 전망과 복지국가별 2015년 지출수준과의 격차



주: 1) 막대그래프는 한국의 연도별 사회지출 전망에서 복지국가별 2015년의 사회지출을 차감하여 작성

2)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은 실적치임

자료: 한국의 전망은 이영(2014), 복지유형별 지출은 OECD Statistics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 자원조달에 앞서 복지확대 압력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선진국의 복지발전 단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과 소득수준에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선진복지국가들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재정악화와 경기침체라는 '복지병'으로 재정위기를 경험했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음⁴⁾
-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자체는 선진국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제도가 도입된 기간이 짧아 국민체감도가 낮아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복지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도한 복지지출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기 마련
 - 단기간에 복지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국민 소득수준, 고령화 속도, 현재의 연금지출의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에게 알맞은 복지재정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자원조달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

□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한다면,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을 약 35%까지 인상해야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 재정위기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수준은 GDP의 50~70%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⁵⁾
 - IMF(2014)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65~75% 정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있으며, 김성태(2014)는 이보다 낮은 50~70%로 추정하고 있음

○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나는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60년에 35%까지 인상해야 함

- 김성태(2014)에 따르면, 국가채무 적정수준(50% ~ 7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60년의 조세부담률은 22.8%~23.3%, 재량지출은 8.2%~8.7%로 유지해야 가능함
- 이는 2015년 현재 조세부담률 18.5%를 4.5%p 인상하고 재량지출은 현재 14.1%에서 약 6%p 축소해야 한다는 의미임
- 이와 같이 조세부담률 인상과 재량지출 축소를 통해 차질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현재 수준에 비해 GDP의 약 10.5%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반면 복지재정은 2015년 10.1%에서 2060년에 33.7%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현재의 지출비중에 비해 GDP의 23.6%에 달하는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됨.
- 조세부담률 인상과 재정지출 축소를 확보된 재원을 모두 복지지출에 사용한다고 해도, GDP의 약 13.1%에 달하는 재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 이는 김성태(2014)가 추정된 2060년의 조세부담률 22.8%~23.3%가 약 35% 수준까지 인상되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임

□ 복지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복지재정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세부담 수준이 우리경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불가능해질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조경엽(2017), '복지국가의 법인세 정책과 시사점' 참조
 5) IMF(2014)는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부채한계치로 정의하고 있음

-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영미형 복지 지출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약 20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우리에게 좋은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음
- 2035년부터는 일본의 지출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을 증가시켜 2060년에 현재의 서유럽 또는 북유럽 지출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복지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조세부담률은 2060년까지 현재 18.5%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⁶⁾

6) 본고에서 논의된 복지재정 규모와 조세부담률 전망은 현 정부 이전의 복지제도만을 포함한 분석인 만큼 향후 현 정부에서 도입되거나 강화된 복지제도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분석이 요구됨

III. 재원조달의 우선순위

1. 기본방향

□ 재정수입 확대 전 재정지출 축소

- 정부가 술선수법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먼저 보일 때 증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음
- 주요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향후 국민부담률 증가 압력보다 재정지출(사회지출) 증가 압력이 클 가능성이 높아 재정지출축소에 보다 역점을 뒤야함⁷⁾
 -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소득수준과 동일한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재정지출은 국민부담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

□ 분배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세정책 운영기조 확립

- 우리나라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57로 0.50에 육박하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 선진국에 비해 조세와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 선진국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조세정책의 개선율보다 4~5배 큰 반면, 우리나라는 둘 모두 개선율이 낮고, 둘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6.1%로 조세의 개선율 4.5%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재정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30%를 상회하여 조세의 개선율에 비해 4~5배 큰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을 보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무상복지 수혜금액이 소득상위 30%가 소득하위 30%보다 1.4배~1.7배 더 받고 있어 지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음⁸⁾

-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대대수가 면세자로 분류되고 있어 조세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7) 전병목·박상원(2011) 참조

8) 조경엽·유진성(2012) 참조

〈표 1〉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개선율

	세전 지니계수	세후 감소율 (%)	조세 개선율(%)	재정지출 개선율(%)
한국	0.341	10.6	4.5	6.1
영국	0.506	35.6	7.2	28.4
미국	0.486	24.0	18.9	5.1
일본	0.462	28.8	-	-
스웨덴	0.427	38.4	7.2	31.2
프랑스	0.483	40.4	7.1	33.3
독일	0.504	42.3	11.2	31.1
OECD 평균	0.475	31.3	-	-

주: 성명재(2014)가 추정한 2014년 우리나라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57이지만, 공식통계는 0.341임

자료: 성명재(2016)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 재정지출은 지원대상자를 선택적으로 제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큼
 - 조세는 특성상 무차별성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원자만을 선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조세정책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면서 소득재분배를 개선하지만, 재정지출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완화시키면서 재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임
-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은 조세정책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재정지출은 형평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조세정책은 분배 보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필요성이 높음

□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 기본 원칙에 충실

- 세원이 줄 경우 자원조달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을 지켜야 함
 - 조세가 야기하는 비효율성은 세원이 줄고 세율이 높을 때 증가하며, 세원이 줄 경우 누진도가 높아져도 소득재분배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⁹⁾
- 세원확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과세자 비율을 확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금 누수를 방지하여 세금포착률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자본에 경과세하고 소비에 중과세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입구조 확립

- 우리나라는 자본과세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글로벌 시대에 취약한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본유출-경기침체-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이 낮고,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OECD국가 중, GDP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31위, 소비세 비중은 30위를 차지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7위, 재산세 비중은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제간 이동성이 높은 자본에 대해 중과세를 하고 있어, 자본유출-투자감소-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을 유발
- 우리나라는 소비세의 비중이 낮아 자원조달의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와 달리 저축에 비과세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이 작다는 장점이 있음
 - 소비세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소득 중립적이라는 것이 실증분석 결과이며, 생애소득 관점에서는 소득 중립적이라는 것이 통설임¹⁰⁾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고려할 경우 소득세를 통한 자원조달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소비세를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하는 이유로 꼽힘

9) 성명재(2016) 참조

10) Caspersen and Metcalf(1994), Creedy(1998), Decoster et al.(2010), 성명재(2016) 참조

〈표 2〉 세목별 세수입 비중(2015년)

(단위: GDP, 총세수입 대비 %)

	법인세		재산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GDP 대비	총세수입	GDP 대비	총세수입	GDP 대비	총세수입	GDP 대비	총세수입
한국	3.2	12.8	3.1	12.4	4.4	17.4	7.1	25.3
OECD	2.9	8.9	1.9	5.6	8.6	24.3	11.2	34.3
순위	7위	5위	10위	2위	31위	28위	30위	20위

자료: OECD Statistics

2. 세원확대 방안

□ 지하경제 양성화

○ 최광(2013)이 언급하였듯이, 지하경제는 세율증가의 악순환, 불공평한 조세부담, 공식경제의 비효율적 작동, 근로의욕의 상실 등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야기함

- 지하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세원이 좁아져 동일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세율이 올라가면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마련임

○ 지하경제 양성화로 약 4.7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전망임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GDP의 약 20%에 달하는 약 313조 원에 달함

- 최광(2013)의 가정과 같이, 재정당국의 노력으로 지하경제의 10%가 양성화되고, 여기에 현재의 조세부담만큼 세금을 징수한다면, 약 4.7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재원확보 가능

□ 세수의 누수방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택스갭은 27조 원에 달해 정상적으로 납

부해야 할 세액의 15.1%를 차지하고 있음

- 택스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무신고, 과소신고, 정상신고 후 체납 등 불성실 납세규모를 의미함

- 조세탈루 규모는 부가가치세가 11조 7,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 8조 원, 법인세 5조 9,000억 원, 상속증여세 9,000억 원, 개별소비세 3,000억 원 등의 순임

○ 이러한 신고누락은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와 판매자 납부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간이과세제도가 영세업자의 납세편의 목적보다는 불법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탈세 장치로 악용되고 있음

* 간이과세자는 2015년 현재 166만 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의 28.4%를 차지하고 있지만, 납부세액은 0.5%에 불과함

- 부가가치세 축소신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와 연결되고 있어 간이과세제도 폐지 필요

- 부가가치세 탈루 또는 체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납부제도를 현행 사업자 납부제도로에서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환이 요구됨¹¹⁾

11)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징수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수가 함께 늘어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한국의 복지지출과 자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매입자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5.3조 원~7.1조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p> <p>□ 조세지출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에 37조 원에 달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조세지출의 80% 이상이 산업·중소·에너지, 사회복지, 농림수산, 보건 등 4대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 수혜계층별로는 조세지출의 2/3(24.4조 원)가 개인 부문에 귀착되고, 나머지 1/3이 기업부문에 귀착됨 ○ 재정지출과 중복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출의 많은 항목들이 재정지출사업과 수혜대상 중복되고 있고, 일몰이 도래해도 연장되거나 유사한 항목이 새로이 도입되고 있어 재정낭비와 적합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음 ○ 최광(2013)의 권고와 같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10%,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의 20%, 지방세 감면의 20%를 축소하면 2015년 기준으로 7.1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투자 등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항목은 유지할 필요성이 높음
	<p>12) 지방세감면은 2014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2014년을 기준을 계산함. 지방세감면액은 2011년에 17.3조 원에 달하다가 감소하여 2014년 13조 원에 달하고 있음</p>

〈표 3〉 조세지출 운용 현황(2015~2017년)

(단위: 조 원, %)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35.9 [14.1]	8.5	36.5 [13.6]	8.4	37.0 [13.3]	8.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0.7	29.7	10.7	29.4	10.6	28.8
	사회복지	9.4	26.2	9.8	26.9	10.3	27.9
수혜 계층	개인	24.4	68.1	24.1	66.1	24.9	67.3
	(중·저소득자)	(15.8)	(44.0)	(16.2)	(44.3)	(16.7)	(45.2)
	(고소득자)	(8.6)	(24.0)	(8.0)	(21.8)	(8.2)	(22.1)
	기업	10.8	30.2	11.8	32.4	11.5	3.1
	(중소기업)	(6.1)	(17.0)	(6.7)	(18.4)	(6.7)	(18.0)
	(상호출자제한기업)	(2.8)	(7.9)	(3.0)	(8.2)	(2.8)	(7.6)

주: 조세지출액은 2015년은 실적치, 2016~2017년은 전망치이고, 조세지출의 비중은 재정지출을 포함한 총재정지출 기준값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9.;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3.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 우리나라의 소득관련 세제는 이중과세, 재원조달 방식과 소득원천에 따른 세부담 격차가 커서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 실제 우리나라의 2015년 현재 근로자의 46.8%와 자영업자의 67.9%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음

-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많다보니 총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위 3.4%가 근로소득세 수입의 47.3%를 납부하고 있음

□ 누진도와 소득재분배는 역 U자 관계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 U자 관계에서 우하향하는 위치에 놓여있어 누진도를 높일수록 소득재분배는 악화되는 경향이 있음¹³⁾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가 큰 선진국은 누진도가 크지 않은 반면, 과세자비율과 GDP대비 세수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을 지님

○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세원이 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성명재(2016)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의 누진도와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세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소득세 누진도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이유는 비과세감면이 많아 세수규모가 작기 때문임¹⁴⁾

○ 영국과 비교해보면, 영국은 상위 10%가 하위 10%

보다 소득세를 44배 많이 내지만,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750배나 많이 내고 있음¹⁵⁾

- 영국은 소득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약 36배 많고, 우리나라는 약 1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득대비 세부담 비중(누진도)은 우리나라가 영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음

○ 그러나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영국이 7.2%로 한국의 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과세자 비율이 우리보다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영국의 소득세 과세자비율은 90%로 우리나라 52%보다 높으며, 이에 따라 영국의 소득세 비중은 GDP의 9.1%로서 우리의 3.7%보다 2.5배나 높음

- 소득재분배는 누진도 뿐만 아니라 세수규모 즉 세원이 얼마나 넓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

□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원확대가 시급

13) 성명재(2016) 참조

14) 성명재(2016) 참조

15)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1,645배 많이 부담하고 있음

〈표 4〉 한국과 영국 비교(2014년)

	시장소득 10분위 배수	소득세 10분위 배수	과세자 비율	GDP 대비소득세 비중	소득재분배 개선율
영국	36.1배 (61.7배)	44.3배 (109.4배)	90% 육박	9.1%	7.2%
한국	10.6배 (6.3배)	749.5배 (108.5배)	51%	3.7%	4.5%

주: ()은 2000년 기준임

자료: 성명재(2016)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함

4.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세입기반 강화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국제간 조세경쟁에 역행하여 자본유치-일자리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

○ 북유럽형 복지국가의 법인세는 평균 22%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며, 영국, 미국 등 우리보다 투자 환경이 좋은 국가조차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할 예정임¹⁶⁾

- 북유럽국가는 사민주의 복지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시장은 철저하게 경쟁과 효율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법인세율 인하로 나타나고 있음
- 영국이 법인세율을 의욕적으로 낮추는 데는 영국에 본사를 두었던 맥도날드, 구글, 야후 등 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등으로 이전한 과거의 경험 때문임
- 법인세율을 높게 유지해도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미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자본유출을 막고 국내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 Tax 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계 개혁의 경제적 효과는 GDP가 6.9%~8.2%, 투자가 20.1%~23.9%, 임금이 5.4%~6.3% 증가하고 일자리는 180만개~216만개 창출될 전망이다

* 조경엽(2016)에 따르면 미국이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고 우리가 3%p 인상한다면 우리나라의 GDP는 4.1%, 투자는 11.9%, 임금은 0.7% 감소하고 일자리는 약 31만개 줄어들 전망

-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이 채택한 정책도 '소비세 인상, 법인세 인하'였음

* 지난 10년간 일본은 소비세를 3%p 인상하였으나 법인세는 9.6% 인하하였음

16) 조경엽(2017), "복지국가의 법인세 정책과 시사점" 참조

〈표 5〉 복지국가 유형별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단위: %, %p)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증감률		
							00~17	05~17	10~17
영미형	33.8	29.8	28.2	26.0	26.0	25.9 (22.5)	-7.9 (11.3)	-4.0 (7.4)	-2.3 (5.7)
· 호주	34.0	30.0	30.0	30.0	30.0	30.0	-4.0	0.0	0.0
· 캐나다	42.4	34.2	29.4	26.7	26.7	26.7	-15.7	-7.5	-2.7
· 아일랜드	24.0	12.5	12.5	12.5	12.5	12.5	-11.5	0.0	0.0
· 뉴질랜드	33.0	33.0	30.0	28.0	28.0	28.0	-5.0	-5.0	-2.0
· 영국	30.0	30.0	28.0	20.0	20.0	19.0	-11.0	-11.0	-9.0
· 미국	39.3	39.3	39.2	39.0	38.9	38.9 (18.9)	-0.4 (20.4)	-0.4 (20.4)	-0.3 (20.3)
북구형	29.3	27.5	26.3	23.1	22.3	22.0	-7.3	-5.5	-4.3
· 덴마크	32.0	28.0	25.0	23.5	22.0	22.0	-10.0	-6.0	-3.0
· 핀란드	29.0	26.0	26.0	20.0	20.0	20.0	-9.0	-6.0	-6.0
· 노르웨이	28.0	28.0	28.0	27.0	25.0	24.0	-4.0	-4.0	-4.0
· 스웨덴	28.0	28.0	26.3	22.0	22.0	22.0	-6.0	-6.0	-4.3
서유럽형	39.8	32.9	29.8	30.4	29.7	29.7	-10.1	-3.1	-0.1
· 오스트리아	34.0	25.0	25.0	25.0	25.0	25.0	-9.0	0.0	0.0
· 벨기에	40.2	34.0	34.0	34.0	34.0	34.0	-6.2	0.0	0.0
· 프랑스	37.8	35.0	34.4	38.0	34.4	34.4	-3.3	-0.5	0.0
· 독일	52.0	38.9	30.2	30.2	30.2	30.2	-21.9	-8.7	0.0
· 네덜란드	35.0	31.5	25.5	25.0	25.0	25.0	-10.0	-6.5	-0.5
남유럽형	37.9	32.9	28.0	28.7	28.7	27.8	-10.0	-5.1	-0.1
· 그리스	40.0	32.0	24.0	26.0	29.0	29.0	-11.0	-3.0	5.0
· 이탈리아	41.3	37.3	31.4	31.3	31.3	27.8	-13.4	-9.4	-3.6
· 포르투갈	35.2	27.5	26.5	29.5	29.5	29.5	-5.7	2.0	3.0
· 스페인	35.0	35.0	30.0	28.0	25.0	25.0	-10.0	-10.0	-5.0
일본	40.9	39.5	39.5	32.1	30.0	30.0	-10.9	-9.6	-9.6
한국	30.8	27.5	24.2	24.2	24.2	24.2	-6.6	-3.3	0.0
OECD 평균	32.5	27.9	25.5	24.9	24.7	24.2	-8.3	-3.7	-1.3

주: 미국과 영미형의 () 안은 트럼프의 세계개편으로 인하되는 연방정부의 법인세율 15%에 지방세 3.9%를 더한 수치임

자료: OECD Statistics, 조경엽(2017)에서 재인용

▣ 법인세 과세구간을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인상하여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려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 OECD 국가 중 다단계 세율구조를 가진 국가는 10개국이며, 24개국이 단일세율로 과세

- 2단계로 과세하는 국가들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국가는 헝가리(21.4억 원), 캐나다(4.7억 원), 네덜란드(2.7억 원)이며, 나머지는 1억 원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
- 미국이 8단계, 벨기에가 3단계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고 있지만, 이들 국가도 실질적으로 단일과세와 다를 없이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과세표준이 3.5억 원 이하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13~35%로 확고한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나, 3.5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은 34~35%로 설계되어 소득금액 차이에 대해 세율 차이가 크지 않음
- 벨기에의 경우도 1.2억 원~4.3억 원 구간에서 35.54%, 4.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3.99%가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선진국이 단일과세 체계를 유지하거나 단일과세와 다를 없이 운영하는 이유는 법인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국가도 없지만,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려는 국가도 찾아볼 수 없음

▣ 법인세의 부담은 타인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주주에게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

○ 법인은 이윤의 주체가 아닌 수입배분의 도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이 배분되는 과정에서 세금도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게 배분됨

- 법인세는 자기자본의 수익(당기순이익)에 과세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주주가 세부담을 짐
- 그러나 법인세 인상으로 노동자에게 배분되는 임금이 줄어들거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세부담은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됨
- 조경엽(2015)에 따르면, 법인세부담은 소비자가 약 30%, 근로자가 20%, 주주가 50%를 부담하는데, 지분율을 고려하면 대주주의 부담비중은 20% 미만으로 추정됨¹⁷⁾

* 총수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총수입이 지분율은 평균 2.6%(16년)에 불과, 법인세를 인상하더라도 부담률은 단 1.3%(= 2.6% * 50%)에 그칠 전망

17) 조경엽(2015),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참조

〈표 6〉 2단계 세율구조 국가들의 기준소득 및 세율

(단위: 자국화폐, 원, %, %p)

		프랑스(중소)	일본(중소)	캐나다(중소)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기준 소득	자국화폐	38,120	8,000,000	500,000	5억	15,000	200,000
	원화	5,000만 원	7,674만 원	4.7억 원	21.4억 원	1,995만 원	2.7억 원
낮은 세율		15	19	11	10	20	20
높은 세율		33.3	25.5	15	19	21	25
세율 차		18.3	6.5	4.0	9.0	1.0	5.0

주: 1) 프랑스, 일본, 캐나다의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법인인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2) 환율은 2014년 9월 29일 매매기준율 기준

자료: IBFD, Tax Research Platform(<http://online.ibfd.org/>), 김학수(2016)에서 재인용

-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하면, 대주주의 부담비중은 더욱 낮아지고 대부분의 법인세 부담은 서민에게 귀착됨

□ 기업규모에 따라 누진구조를 강화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대기업의 소액주주보다 세부담이 적어 조세형평성에 위배

- 2,000억 원 이상의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주주는 가난하고 대기업의 주주는 부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중소기업일수록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누진구조를 강화할수록 소득재분배는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법인세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심화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저소득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조경엽(2015)은 경기침체에 저소득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법인세가 인상되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사업 또는 대부업체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소득재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5. 부가가치세율 인상

□ 서울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경우 소비세율 인상이 최우선 대상임

- 소비세는 세율이 넓어 한계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꼽히고 있으나, 세부담의 역진성과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치적 수용성이 낮은 상황임

- 성명재(2016)에 따르면 영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상대소득격차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10분위 배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소득과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의 상대 비는 영국이 0.45로 추정되고, 우리나라는 0.71 ~ 0.89로 추정되어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낮은 편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노인인구비율이 낮고 생필품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면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소비세는 소득비례적인 분포에 가까움
- 우리나라와 영국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역진도 크기의 차이로 부가가치세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영국은 -11%에 달하고 우리나라는 -0.4 ~ -0.64%에 그치고 있음

〈표 7〉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 및 소득재분배 개선율: 한국과 영국 비교(2014년)

	총소득 10분위 배수 (A)	부가가치세 10분위 배수 (B)	상대비율(B/A)	지니계수 개선율 ¹⁾ (%)
영국 ²⁾	13.70	6.10	0.45	-11.0
한국	가계동향조사	9.61	0.89	-0.45
	재정패널	22.41	15.91	0.71

주: 1. 지니계수 개선율은 성명재(2016)의 [그림 9]에서 인용하였기 때문에 성명재(2016) 추정치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영국의 소득재분배율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이지만 간접세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차지하고 있어 한국과 비교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영국 통계청(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성명재(2016)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한국의 복지지출과 자원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선진국은 부가가치세를 인상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여 왔음
- 이러한 배경에는 부가가치세는 세원이 넓어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이 작다는 점과 생애부담이 소득 비례적이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구구조변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위주의 자원총당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타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넓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전략임

〈표 8〉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세목별 최고세율 추이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07	2016	증감	2007	2017	증감	2007	2015	증감
영미형	42.8	45.8	3.0	29.8	25.9	-3.9	13.4	14.6	1.2
북구형	51.5	50.8	-0.7	26.8	22.0	-4.8	24.3	24.8	0.5
서유럽형	48.5	52.5	3.9	31.6	29.7	-1.8	19.7	20.2	0.5
남유럽형	42.5	51.1	8.6	30.3	27.8	-2.5	19.0	22.3	3.3
OECD 평균	41.3	43.3	1.9	26.8	23.9	-2.8	17.8	19.2	1.4
일본	50.0	55.9	5.9	39.5	30.0	-9.6	5.0	8.0	3.0
한국	38.5	41.8	3.3	27.5	24.2	-3.3	10.0	10.0	0.0

주: 영미형에서 미국을 제외하였음

자료: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는 OECD Statistic Taxation, 부가가치세율은 OECD(2016) "Consumption Tax Trend 2016: VAT/GST and Excise Tax Rates: Trend and Policy Issues"

IV. 결론

□ **조세·재정정책이 인기 영합적으로 결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담-복지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데서 출발해야 함**

- 새로 도입된 복지재원이 현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라든가, '부자증세'만으로도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복지확대 요구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어려워짐
- 복지확대 요구를 통제하는데 실패한 남유럽과 재원 조달에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의 적정규모와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히고 합의를 이뤄야함

□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복지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복지재정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국가들과의 격차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성이 높음
-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영미형 복지 지출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5년까지 일본의 지출수준을, 203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60년에 북유럽형을 목표로 설정
 - 이와 같이 설정한다면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저복지에서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 단계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현재 18.5%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2060년에 25% 내외로 유지할 수 있음

□ **재정지출축소-세원확대-세입구조조정 순의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우리가 선진 복지국가의 전철을 따른다고 가정하면 세입확대보다는 세출증대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출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어야함
 -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국민적 합의 도출이 가능함
- 다음은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자비율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및 텍스갭 축소를 통한 조세포착률 확대임
 - 부가가치세의 축소신고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탈루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자납부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세입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 조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조세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지출은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함

□ **소비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로 소득세의 세수기능을 강화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함**

- 소비세는 세원이 넓어 동일한 세수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개인소득세와 달리 저축에 비과세되고 있어 재원배분의 왜곡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 소비세율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도는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한 것은 좁은 세원 때문인 만큼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세원확대에 역점을 뒤야함
- 법인세 정상화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과세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데서 찾아야 함

〈표 9〉 자원조달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세부 추진방향
1. 복지재정 장기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60년 전망 GDP의 33.7% → 27.5%(복구형)으로 축소 •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 70%, 조세부담률 25% 내외
2.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적 지출을 현행 GDP의 14.1% → 8.5% 내외로 축소
3. 세율 인상 전, 세원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경제 양성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자납부제도로의 전환 • 조세지출 축소
4. 소득세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
5. 법인세율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간 조세경쟁에 맞춰 세율 인하
6. 부가가치세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율 단계적 인상

[참고문헌]

김성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김성태·박진 편, KDI, 2014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2014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지출 예산서』, 기획재정부, 2017.

김학수, “법인세율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논의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박형수·전병목,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1

성명재, 『장·단기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진도 추정과 인구고령화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16

성명재,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한국경제연구원, 2016

이영,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 규모와 구성”,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김성태·박진 편, KDI, 2014

조경엽, “부가가치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평가”, 『재정건전성의 평가 및 정책과제』, 김성태·박진 편, KDI, 2014

조경엽, 『재정지출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정책연구 2015-20, 한국경제연구원, 2015

조경엽, 『법인세, 누가 부담하는가?』,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15

조경엽, 『법인세 오해와 진실』,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2015

조경엽, 『법인세 인상이 자본 유출입에 미치는 영향』, 정책연구 2016-13, 한국경제연구원, 2015

조경엽, 『트럼프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KERI Brief, 2016-39, 한국경제연구원, 2016

조경엽, 『복지국가의 법인세 정책과 시사점』, KERI Brief, 2017, 한국경제연구원, 2017

조경엽·유진성, 『무상복지 소득재분배 효과』, KERI Insight 12-09, 한국경제연구원, 2012

최광, “복지재원 조달방안과 재정건전성 논의”, 『예산정책연구』 제2권 제1호, 국회예산정책처, 2013

Caspersen, E. and G. Metcalf, “Is a Value Added Tax Regressive? Annual versus Lifetime Incidence Measures”, National Tax Journal, Vol. 47, No. 4, 1994

Creedy, J., “Are Consumption Taxes Regressive?”,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31, No. 2, 1998

Decoster, A., J. Loughery, C. O’Donoghue, and D. Verwerft, “How Regressive Are Indirect Taxes? A Microsimulation Analysis of Fiv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29, No. 2, 2010

IMF, “Republic of Korea: Staff Report for the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2014

<웹사이트>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OECD Statistics, <http://stats.oecd.org/>

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9월 22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